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381

발의연월일: 2021. 7. 7.

발 의 자: 장경태·김의겸·민형배

양이원영 · 오영환 · 윤미향

이워택 • 장철민 • 전용기

정춘숙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,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허가권자"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권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,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두어 공사감리를 할 수 있음.

또한,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확보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음도 불구하고 해체 공사에서 계속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,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가 발생하며 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.

이에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, 공

사 완료 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 리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30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, 공사 완료 후 해당 자료 일체를 허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・	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에
	는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
	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
	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7
	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
	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
	포함하여야 하며, 공사 완료 후
	해당 자료 일체를 허가권자에
	게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
<u>③</u> ~ <u>⑤</u> (생 략)	<u>다.</u> ④ ~ <u>⑥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5
	항까지와 같음)